

## 충청북도농산물원종장 조례증 개정조례(안) 검토보고

### 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2. 4. 28

나. 회부일자 : 1992. 4. 29

### 3. 제안이유

- 연구기관이 아닌 단순한 종자생산 보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산물원종장장의 정원이 단일 직렬(지방농업 연구관)로 되어 있어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어려우며
- 타도에서는 87년도에 장장의 직렬을 지방농업 기정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복수 직화하였으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상의 정원에도 복수직으로 되어 있으므로 도간 형평 유지 및 정원규칙과의 일치 도모

### 4. 주요골자

- 농산물 원종장장의 정원(직종)을  
“지방농업연구관(4급)”에서 “지방농업기정 또는 지방농업 연구관(4급)”으로 조정

### 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농산물 원종장 조례증 개정조례(안)를 검토한 바

- 전문적인 연구기관이 아닌 단순한 종자생산 보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산물 원종장장의 정원이 지방농업 연구관이란 단일 직렬로 되어 있어 인사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있지 못하며
-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상 복수직(지방농업기정, 지방농업연구관)으로 되어 있음(타도에서도 이미 본 조례를 개정시행하여 오고 있음).
- 본 조례를 개정하여 인사관리에 효율을 기함은 물론 타도와의 형평을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 6. 별 철

- 충청북도 농산물 원종장 조례증 개정조례(안) 1부.
- 신구조문 대비표 1부.
- 참고자료(생략)
  - 법령 부분 말해 1부.
  -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1부.
  - 도별 조례상 농산물 원종장장 직업 현황 1부.

## 충청북도농산물원종장 조례중 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4 조 (장장) 제1항중 "지방농업연구관(4급)을 "지방농업기정 또는 지방농업연구관(4급)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경
제4조 (장장) ① 농산물원종장에 장장을 두며 지방농업연구관(4급)으로 보한다.	제4조 (장장) ① ..... ...을 두며 지방농업기정 또는 지방농업연구관(4급)으로 보한다.